

생활체육위원회규정

제정 2006. 4.16.

개정 2020. 9.24.

개정 2022.12. 7.

제1장 총칙 <제목 개정 2022.12. 7.>

제1조(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정관 제4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생활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0. 9.24., 2022.12. 7.>

제2조(목적) 위원회는 생활체육으로서의 골프 스포츠의 보급과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대중 스포츠로서의 골프 문화 정착에 노력한다. <개정 2022.12. 7.>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 7.>

1.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 7.>
2. 동호인을 위한 골프 규칙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12. 7.>
3. 동호인을 위한 골프 경기 지도·후원 <개정 2022.12. 7.>
4. 시·도 협회를 통한 생활체육사업 지원 <개정 2022.12. 7.>
5.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2.12. 7.>

②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한 세칙은 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 7.>
[본조 신설 2022.12. 7.]

제2장 구성 및 회의 <제목 개정 2022.12. 7.>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 7.>

1. 위원장 1명 <신설 2022.12. 7.>
2. 부위원장 1명 <신설 2022.12. 7.>
3. 위원 10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개정 2020. 9.24., 2022.12. 7.>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항 신설 2022.12. 7.>

1.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2.12. 7.>
2. 정관 제34조에 따라 다른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2.12. 7.>
3.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12. 7.>

4.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 7.>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0. 9.24., 2022.12. 7.>

제5조(위원의 위촉 및 자격)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24., 2022.12. 7.>

②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2.12. 7.>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 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 7.>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2. 7.>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12. 7.]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6.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본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본조 신설 2022.12. 7.]

제9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 7.>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 7.>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 7.]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본조 신설 2022.12. 7.]

제8조 삭제 <제3조제1항으로 이동·수정 2022.12. 7.>

제9조 삭제 <제3조제2항으로 이동·수정 2022.12. 7.>

부 칙 <2006. 4.16.>

제1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 7.>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2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 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 부터 시행한다.